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255호

2026년 부산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장비사용료 지원사업 안내 공고 (2차)

부산테크노파크가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사용료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9일

부산광역시장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장비 활용 부담을 완화하여 기술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화 촉진을 도모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공고일 기준 부산지역 내 본사, 지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확인되는 기업

○ **(지원내용)** 부산테크노파크 연구개발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사용료 지원

○ **(지원기간)** 2026년 6월 ~ 12월 ※ 지원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금액)** 기업당 장비사용료의 60% (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 기업당 연 최대 6백만원 내 지원 (최대 3회 분할 신청 가능)

○ **(지원방식)** 장비사용료 기업 선납 후 사용 실적 및 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사후 환급

2 지원절차

① (TP) 사업공고	▶	② (기업) 장비사용 신청	▶	③ (TP) 지원대상 선정
- 부산TP 홈페이지 공고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검토 후 지원대상 선정

④ (기업) 장비 사용	▶	⑤ (기업) 지원금 신청	▶	⑥ (TP) 사용료 환급
- 선정 통보일 이후 장비 사용		- 장비 사용 후 증빙서류 제출		- 장비 사용 실적 및 증빙 검토 후 사용료 환급

3 장비사용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6. 19.(금) ~ 2026. 9. 30.(수) 18:00

○ (신청방법)

① 공동활용 연구장비 목록[첨부1] 확인 후, 장비담당자와 장비 사용 가능 여부, 이용 일정 및 사용료 등 사전 협의

②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전자메일(infra@btp.or.kr) 제출**

※ 신청 전 장비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필수) 장비지원 신청서(양식참조), 사업자등록증(본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동의서(양식참조)
- (해당시) 지사, 공장 또는 연구소 부산소재 확인 가능 서류, 우대사항 증빙서류(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서)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 (선정방법) 지원요건 충족 여부 및 우대사항 해당 여부 검토 후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 선정

○ (우대사항)

우대가점 기준	비고
신규활용 기업(TP장비 최초 활용 기업)	우대가점 +1 (중복 최대 2점 적용)
창업 7년 이내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기업** ※ 인증기한 유효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기업** ※ 지원금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 우대사항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선정통보) 신청서류 접수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

※ 실무담장자 연락처(H.P), 전자메일(E-mail)로 통보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장비사용)

- 선정 통보일 이후 장비 사용 원칙
- 장비 담당부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지원기업 장비사용료 납부

○ (지원금 신청)

- 장비 사용 이후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대상 선정 통보 이전에 사용한 장비는 지원 제외
- 제출서류 목록

연번	제출서류명	비고
1	지원금 신청 공문	[양식3] 참조
2	장비활용 보고서	[양식4] 참조
3	만족도 및 성과조사	[양식5] 참조
4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양식6] 참조
5	견적서	
6	세금계산서	
7	이체확인증	
8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제출	
9	제품 인증 신청 증빙서류	지원신청 해당시

○ (지원금 지급) 제출서류 및 장비 사용 실적 확인 후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기업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장비 사용료 납부 및 사용 실적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6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동일 목적·동일 항목으로 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신청 및 선정 불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 선정 통보 이전에 사용한 장비
- 장비 사용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확인된 경우

○ (기타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보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성과조사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지원 취소 및 환수)
-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 동일 목적·동일 항목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한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7 문의처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기업지원단 인프라지원팀	김남희 과 장 최동일 연구원	051-320-3576 051-320-3577	

[양식1] 장비지원신청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본정보 (본사기준)	기업명	㈜ㅇㅇ기업	대표자 성명		대표전화	
	설립일	20010101	기업형태	개인/법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미보유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업태/종목		KSIC 코드	A0000
	우편번호		상세주소			
부산시 소재확인	□ 본사 □ 지사 □ 공장 □ 연구소 ※본사외 확인서류 제출				소재지	부산시 사상구
실무담당자	성명/직책	홍길동/과장	연락처(H.P)	010-0000-0000	E-mail	

신청기업 주요현황	년도	매출액 (천원)	수출액 (천원)	종업원수 (명)
	2023년			
	2024년			
	2025년			

장비이용 목적	ㅇ 장비활용 목적의 구체성 및 명확성 - ㅇ 연구개발에 따른 장비활용 필요성 - ㅇ 장비이용 결과물 -

신청장비 (※신청 전 장비담당자 협의 필수)	보유 센터명		제품/시료명	
			이용수수료	ex. 100,000원
			이용 횟수(단위)	ex. 1시간, 시료1개, 1일
	장비명 또는 인증시험설비명	세부항목 있을시 포함 기재	총 이용 수수료 (VAT미포함)	원
	이용기간(예정)	2026. . . ~ 2026. . . (일/ 시간)	지원 신청금액 (60%)	원

우대가점	□ 신규활용 기업(TP장비 최초 활용 기업) □ 창업 7년 이내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인증기업 ※ 인증서 첨부 및 인증기한 유효 □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기업 ※ 지원금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 인증시험명 : • 시험결과 제출처 : • 인증획득 예정일 : '26.00.00.

상기 내용과 같이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자 : (인)

(재)부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양식2]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제공동의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2026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부산테크노파크의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및 관리, 협약 및 협약 후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기업)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소속 및 직위, 이메일, 기업명, 업태・종목, 주생산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수, 소재지 등 신청서 및 제반 제출서류내 정보, 심층 현장조사 및 위기진단 조사결과 정보

3. 개인(기업)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까지

【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본인은 개인(기업)정보 처리 방침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위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기업명) (대표자명) (인)

(재)부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양식3] 지원신청 공문 ※ 회사자체 공문양식 사용해도 무방(단, 아래내용 모두 포함)

[회 사 명]

수신자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경유)

제 목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신청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재단에서 수행 중인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장비사용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 임 : 1. 장비 지원신청서 1부
2. 장비 활용보고서 1부. 끝.

※ 상기 신청금액은 국가과제 혹은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이 아닙니다.

회 사 명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담당자 (기안자직급)	서명	[결재자 1직급]	서명	[결재자2직급]	서명

문서번호 [기업문서번호 형식] 시행일자 2026. 00. 00.

우 000-000 [회사주소] / http:// [홈페이지 주소]

전화 055-000-0000 /전송 055-000-0000 /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양식4] 장비 활용보고서 ※ 페이지 부족시 추가 가능

연구개발장비 활용 보고서

신청기업 기본정보 (본사기준)	기업명	㈜ㅇㅇ기업	대표자 성명		대표전화	
	설립일	20010101	기업형태	개인/법인	기업부설연구센터	보유/미보유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업태/종목		KSIC 코드	A0000
	우편번호		상세주소			
부산시 소재확인	☐ 본사 ☐ 지사 ☐ 공장 ☐ 연구소				소재지	부산시 사상구
실무담당자	성명/직책	홍길동/과장	연락처(H.P)	010-0000-0000	E-mail	

활용장비 정보		공동활용장비명	사용목적/용도	장비사용일자	이용수수료 (단위:원, VAT별도)
	1	동결건조기	성분분석	2026.03.01	3,000,000
	2				
	3				

	내용	사진
공동장비 활용성과 및 기대효과	ㅇ 장비 사용 내용 및 실적 및 제품 사진(사용 장비별로 작성) * 장비사용 결과 및 산출물에 대한 활용 계획 등 내용 기술 - -	

상기 내용과 같이 연구개발장비 활용보고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자 : (인)

(재)부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양식5] 만족도 및 성과조사

장비사용수수료 지원금 수혜기업 만족도 및 성과조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수행중인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사업('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일환)의 성과도출 및 기업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래 항목을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당 사항의 □에 √체크해 주시고, 세부사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용기업 기본정보

기업 정보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업 종		주생산품	
	'25년도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
산업 분류	□기계 □소재 □전기전자 □자동차 □항공 □조선 □반도체 □IT □의료기기 □바이오 □신발 □기타( )			

Ⅱ. 장비활용현황

▪ 장비사용 목적

□제품개발 : ①시제개발 ①제품개선 ②proto개발 ③초도양산 ④기타 ( )

□품질관리 : ①외부납품(성적서발행) ②내부 품질관리 ③기타( )

▪ 장비사용으로 인한 정량적성과

순번	성과 항목	이용 전	이용 후	장비활용 후 직·간접 기여율
1	□ 매출증대	천원	천원	%
2	□ 품질향상	%	%	%
3	□ 제품개발	① 개발 완료여부: □ 개발완료, □ 개발진행중, □ 개발실패 ② 장비사용이 제품개발에 기여한 성과( )		
4	□ 인증획득	① 인증 획득 여부: □인증획득, □획득 진행중, □ 획득실패 ② 신청 인증명:		

▪ 본 사업(수수료지원) 수혜실적: ①건수 (건), ②지원받은 금액 (원)

Ⅲ. 기업만족도 및 건의사항

▪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 의견 예) 신청 절차, 지원금액, 개선사항, 기타 건의 사항 등 ( )
▪ 수수료 지원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만족도 선택 사유 :)
▪ 차후 수수료 지원 재신청 여부 □ 예 □ 아니오 (아니오의 경우 사유:)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식6]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 및 당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재)부산테크노파크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 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부산테크노파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기관)이 서명날인한 서약서의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 (재)부산테크노파크는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 (재)부산테크노파크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 등)을 환수 및 범죄협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0조, 시행령 제5~7조)**

- (재)부산테크노파크는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부산테크노파크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2026년 00월 00일

(기업명) (대표자명) (인)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배경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도 증가

부정청구시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이 상이하여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던 상황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법	+	시행령
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대상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의 환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부정이익의 환수 + 이자 ※연1.8%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허위청구	→	부정이익 가액의 ×5
과다청구	→	부정이익 가액의 ×3
목적 외 사용	→	부정이익 가액의 ×2

명단 공표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검찰,경찰)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책임감면
- 신변보호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044-200-7642~6